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6,06, 이전부터 계속 거주)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마 주택공급시청자의 배우자의 집계비속 : 주택공급시청자의 세대벽 주민등록표에 화께 등재되어야 한 (예) 전호자녀 등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기능합니다.

b th
 (PC · 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당첨된 주택의 구분

2 단지 유의사항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입주시기: 2027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상기공급크액은 취득체 소유구 에전등가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교환된 금액이며, 제약자 부담으로 남부하여야 함.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평택시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거주자(50%

- 기관추천 / 다자녀기구 / 신호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선명인식 60배 이야 | 300인년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지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3세대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출산이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 · 낙대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악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앙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100% 초과 120% 이하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훈인시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훈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괘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 당첨자 선정 순서: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단계 소득구분

– 소득 확인 시점

소득구분

시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안신청자 및 그 배우지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선호부부는 호언시고입부터 인주자인공 교실 현재까지 계속 우두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호부부 특별공급 특례)

1단계 산생아 우선공급(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낙청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청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공계없이 주택건설지역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전국(서울, 인천,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나머지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30%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경기도 거주자 2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기타지역 거주자 50%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전국) 거주자

자에는 도입, 게임자와 마음에 내역가 보면 중의 물 여기로 단습되는 근단되고 물증이 물 보다 * 현재 호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산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③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산청자의 전혼자네(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산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동본에

미성년 지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괴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추천공급 부부 모두 소특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쪽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기구원수 산정 기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언정하고, 공급신청자의 대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 선물전교도들 소트산업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신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진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사는 기교 - 부동사가에 사축기준 : 「곳곳주택 특별번 시행규칙, 제13조제2학 및 「곳곳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 ·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다. 아내 아무는 사내 * '동지법, 제2조제 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동재된 경우 * '조지법, 제2조제 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기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건축물 종류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11,139,704원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9.806.31384 11.547.85484 12.285.09984 13.388.59584 14.492.09084 15.595.5868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기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복무확인서

관련 입증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배점기준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직계비속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본인발급용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배점기준표 작성(견본주택 비치)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시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사)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사) * 온라인신분증 첨부가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자체교함" 박근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해당시작 되 시작에 가구에는 강단이영 경기복구보인 해당시작으로 당임된 영구 ^그 문복구가(진)당한 이영/를 당시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정자인 경우: 파건 및 출장명령세 집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난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아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사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화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시향,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본인 · 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원은 전원 인증서(공동ㆍ금융) 준비 필수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작계존속 - 요양시설 및 해외채류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작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탓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본인 및 만19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 상 등재되어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지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인에서 이십 온단인요글로구니 구구락/10분 단당도구의 이는 당구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기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표정 신호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수류] 참고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 · 발급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해당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행정복자센터에서 발급)

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옥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확인 작성(견본주택 비치

·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이를 자녀하여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신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피부양 직계존속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점산정 기준표 작성(견본주택 비치

- 유노현 의 시역에 거두하는 19년이당 경기국구로 먼지 구도 가는 가는 공급되다 있습니다. 해당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해당지역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세대구성(3)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약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부모부양 특별공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불가하므로, 계약금 납부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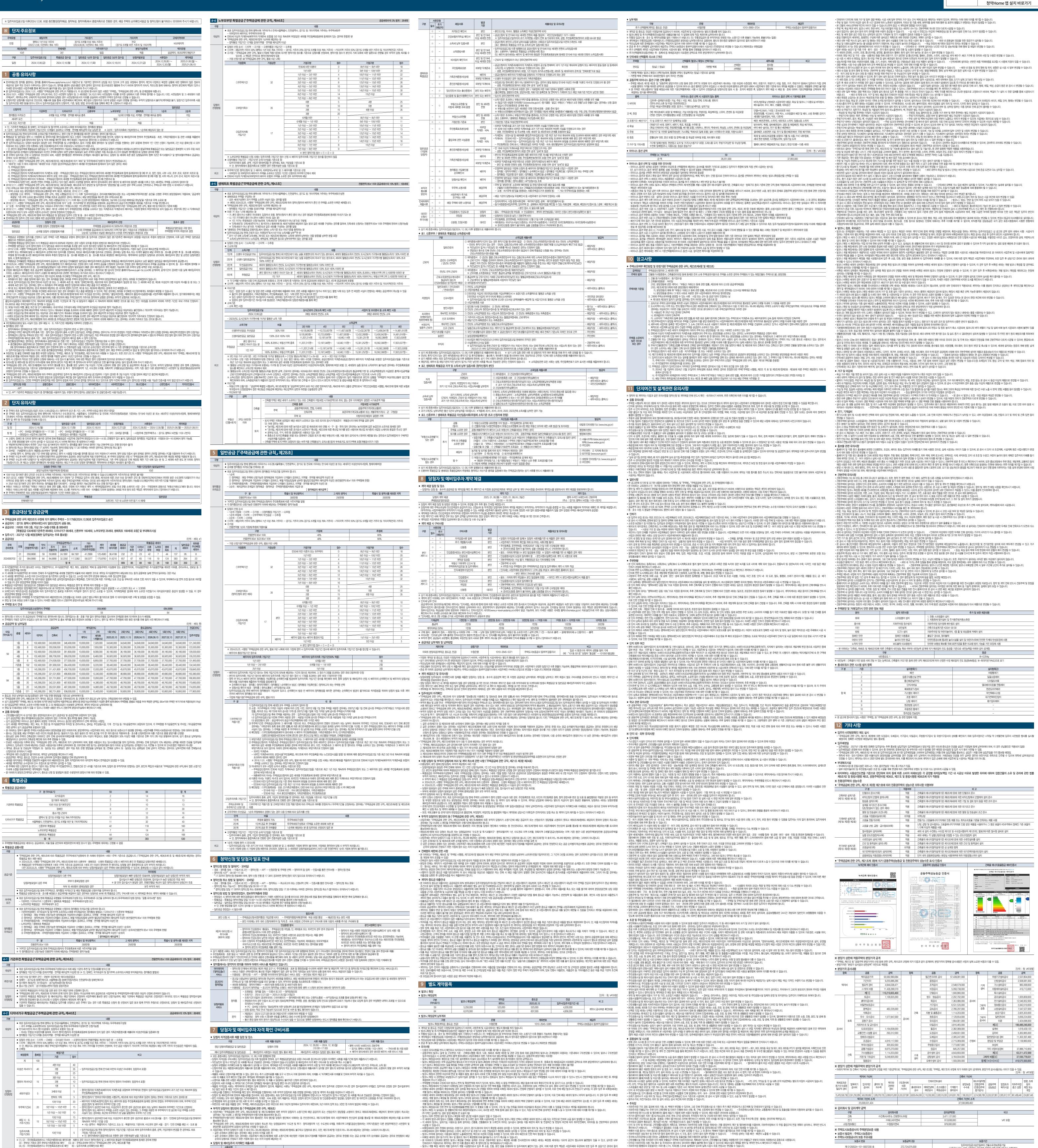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입주자모집공고





보증서 번호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보증약관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시장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14, 201호 견본주택위치

견본주택

자동제어설비공,

분담금 및 부담금 63,311,472,569

건축비 가산비 소계

합보다가서 많은 보다. 5. 공사가 보충해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충해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충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제공고를 한 일간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102-2번지

엘리베이터호출 연동제아

무인택배시스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난방, 급당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표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이래의 택치비 및 건축비 기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금에 관한 규칙, 제21조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이래와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286,915,000 6,333,327,861 8,829,454,260 2,110,236,300 2,328,519,330 3,916,001,700 1,199,333,317 3,314,580,786 6,333,327,861 2,005,912,107 961,408,440 224,807,44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골보러 구기에 끌어되는 그것으로 에르다는 보급에 단신을 하는 그 전에 자칭을 보내할 수 있는 다른 이 하는 그런 그 이 88을 수 있습니다. 바확장 세대의 경우 등가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진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신을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진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익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확장공사 내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시 선택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선택안 에어컨설치부위 업체명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거실, 침실1 2안 거실, 침실1,2,3 6,600,000 660,000 5,280,000 4개소 RNW0160K2WP/RNW0160K2WP 1안 거실, 침실1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2개소 RNW0720C2WP/RNW0320C2WF 7.100.000 710.000 710.000 5.680.000 4개소 2안 거실, 침실1,2,3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니스템 에어컨 옵션 마션텍시 시설 시설 클럽, 게임로 연극을 파스트, 시크는 에어난 답입되고 등 아무극 Solicia라 및 로포스카(사리) - 124와(사료) 니스템 에어컨 옵션 마션텍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으며, 스탠드형 에어컨(거실) 및 벽걸()형(천실))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매립형 냉매배관으로 설치된 니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거실) 및 벽걸()형(천실)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실공간에 설치) 니스템 에어컨, 주방가전제품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시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키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그는 보다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는 소리에서 설치된 제품은 건본주택용으로 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과는 제품이 상이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수의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 방의 생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가벼형 백체를 확정할 경우에는 실면적이 증가하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음. 에어컨 옵션 설치단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상이할 수 있음

3연동 슬라이딩 도어(수동

주방상부 유리장 + 독립형 후

하부장 (와인랙 포함) + 매입콘센 세라믹 (아일랜드 식탁 위 매입콘센트 포힘

세라믹 (크기 : 약 1 200×1 200mm)

59 전창시공 후퍼옵틱 2,000,000 84 ※설치 제외 위치: 실외기실, 대피공간, 침실1 내창 코리아 2,500,000

- 데잉글시간글림은 글로의 혹칭 계곡시에는 계곡에 가능함 - 실외기실, 발코니 내측창은 시공부분에서 제외되며, 태양열차단필름의 특성상 인공조명과의 간섭에 의한 야간 점등시 무지개현상이 생길 수 있음

주방 홈바

주방 상판 및 벽체

조명특화

다기능 배기팬

④ 태양열 차단필름

태양열 차단필름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③ 빌트인 가구 및 마감자재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u>빌트인 가전</u> [단위 : 원 / VAT포								
품목	주택형	제품명	업체명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전금	비고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수납장	전타입	RF60DB9342AP/RQ33C74E1AP [새틴화이트 (웰컴라이트)]	삼성전자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LG/삼성 中 택 1
		BC4S1AA1 / BC3K1AA1 [미스트베이지 (노크온)]	LG전자					
식기세척기	전타입	DW60T7065SS	삼성전자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LG/삼성 中 택 1
		DIB22S	LG전자					
인덕션	전타입	NZ63B5056AK	삼성전자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LG/삼성 中 택 1
		BEI3GQBI	LG전자					
~ 빌트인가전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게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는 개별선택이 불가함 ~ 빌트인 냉장고 미선택시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됨 ~ 빌트인 냉장고-1김치냉장고+수남장 선택시 냉장고는 작측에 김치냉장고는 우측에 설치될 예장이며, 수남장은 옵션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수남장 내부에는 인출박스가 설치됨 ~ 빌트인 냉장고 도어는 색상을 지정하실 수 없으며 LG/삼성 각각 건분주택에 설치된 색상으로 적용됨(96만임: LG가전 전시 / 84타임 : 삼성가전 전시)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 주방우물천장+간접등, 라인등

현관중문 설치로 인해 신발장의 크기, 현관디딤판의 크기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시 현관중문과 중문의 손잡이 사양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을 네라믹 아트월 미선택 시 거실에는 타일(600X600mm)로 설치되며.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음. 아트월 타일의 줄눈은 시공되지 않음

업체명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 세라믹 아트월 마시템 시 가실에는 타일(600%600mm)로 설치되며, 타일의 나누가는 번경될 수 있음. 아트월 타일의 줄눈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무장 옵션(상부장 하부에 Ch/Off 스위치 제공) 미신택시 가구도어로 적용되고 조명은 미설치됨
- 주방 상무장 유리장 옵션(시부 중하부에 Ch/Off 스위치 제공) 미신택시 최내형 후드가 가구도어로 적용되고 조명은 미설치됨
- 주방 상판과 박체의 세라믹의 이음새 위치 및 패턴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에는 육안으로 보일 수 있음 - 주방 상판 및 박체 미선택 시 상판은 인조대리석(MMA), 벽은 타일(300X600mm)이 설치됨
- 59타일에 한해 주항 상판 및 박체 옵션 선택시 아일랜드 식탁에 메입 콘센트가 설치된, 메입 관센트 설치시 이일랜드식탁 옆 기본형 벽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음
- 8선으로 설치되는 매입콘센터(56당입 이일판는 식탁에 생태인 콘센트가 설치된, 메입 관센트 설치시 이일랜드식탁 옆 기본형 벽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음
- 음선으로 설치되는 매입콘센터(56당입 이일판는 식탁 및 성유법인 출반는 독급의 타시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8선단일 전치되는 매입콘센터(56당입 이일판는 식탁 및 성유법인 출반는 독급의 타시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8선단일이 주방홀바 미선택시 홈바 옆 상부장과 상판 사이에 중간쟁(미드웨이장)이 설치되며 홍바 선택시에는 중간쟁(미드웨이장)이 설치되지 않음.
- 84단일의 주방홀바 마선택시 함바 옆 상부장과 상판 사이에 중간쟁(미드웨이장)이 설치되며 후바 선택시에는 중간장(미드웨이장)이 설치되지 않음.
- 84단일의 주방홀바 전병이 보다된 보전함이 왕세당을 병보 본 본환형의 위치는 신발장 상부로 또는 냉장고장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분전함 설치시 해당 수납장은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참실 조명특화 미 선택시 스위치는 1회로로 적용됨 - 본 공사시 우물천장의 크기는 천장 설비배관에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독생을 조명특화 미 선택시 드레스룸 일반형이 설치됨 일반형은 벽판발과 박부형 사원 전체 전체 주 보건되어 오심은 사실 기구에 소용 자근에 소용 구급형으로 석치되어 있을 시스템 사장 보건되어 오심은 제안 중심 상대되어 있을 시스템 사장 보건되어 오심은 제안 중심 상대되어 오심은 제안 중심 경임으로 선택적으로 모양하면 요심은 제상 경임.
- 드레스를 독화 미 선택시 드레스를 일반형이 설치됨 일반형은 벽판발과 박부형 사업되었다! 있을 건물꾼들만 주요인에 드레스를 일반형 8선단인에 오심은 제인 스웨스를 구급형으로 석치되어 있을 시스템 사장 보안된 중심은 장면 없음가 설치됨. :레스룸 일반형은 파우더 거울의 형태가 다르며 거울 뒤 간접조명과 선반의 조명은 설치되지 않음. 견본주택은 59타입에 드레스룸 일반형, 84타입에 유상옵션인 드레스룸 고급형으로 설치되어 있음. 시스템 선반 및 하드웨어, 액세서리는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다기능 배기땐 옵션은 욕실1,2를 포함한 옵션으로 개별선택이 불가함 ㅡ 다기능 배기땐 선택시 설치워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미선택시 일반 배기땐이 설치됨

■ 단위세대 유의사항

■ 805동

세네 네크 글 파시크 클로트 국에 내가 네구에가 게 되어난 중에 파기가 (라네네이용)다. 라이용을 세구가, 단요가 이는 보기 중시되었다. 주방 레인지 후드 상부 장에는 소방 법규에 맞게 자동식 소화가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그로 안해 수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방에 가스 배관, 후드 환기 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 배관과 후드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한관, 현관 창고, 욕조, 사위부스, 세면대 하부장, 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등 일부 구간은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각 세대 내 환기 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전열 교환 환기장비는 덕트가 노출되어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이 』생할 수 있습니다. 상재 등 유사시에는 대피공간을 통해 피난하여야 합니다. •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물건 적체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는 마이에 나는 중 하는 글에는 한 John 에는 에는으에 중 180여 가까요. 요즘 이 사람이 가게요 자네 과학 에 가게 하게 가게 하는데 그가 그 수 있는 안전 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이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 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참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 세제가 아닌 중성 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용도실의 모어는 ABS소재로 설치되며 단열 및 차음성능은 없습니다

· 욕실 기술 및 열세류는 즉 할정 정시를 위하여 불일러나 안경 세계 (자신들 사용하시기 마습니다.) • 사용포실의 포어는 MS32세포 열시되며 한걸 및 자음경용는 합읍니다. •실외기실의 오아는 금속청호로 설치되며 단열 및 차음성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만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생장고, 김치생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출입문 또는 빌트인 가구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인조 대리석과 엔지니어드스톤 등 석재류와 주방 상판 및 벽은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거실 아트월 부위는 줄눈 채움이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콘센트와 배선이 노출됩니다. 세대 내 올림공간(우물천장)의 천장고는 상부 세대 및 당해 층 설비 배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O용체를 이용거를 가는 무취으로 가장에 가득하게 자르게 가장 돌답에 먹는 글로 중 모든 승규로 단에 가장을 구하여 경우를 마에로 근로 두 짜답되다. 1일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패드 설치 구간은 실외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생활시설 지붕층 일부에는 주방환기설비, 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장비의 수증기, 소음, 분진, 진동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전용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과 인접한 102동 세대는 소음 및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는 단어공식에는 다음 사이국가의 공기 국내에 쓰는데 무게이라고 나라고 내려고 그는 점점에 오르고 그 만든데요는 라이기 결승을 꾸 쓰는데다. 크린생활시설은 아파트와 별도구 커릭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자지분에 때를 구획 및 분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리생활시설이 대자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 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동별 유의사항 - 301동 - 801동 3.4호 라인은 인접한 주출입구에 의해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채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01동 1.4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버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801동 2호 라인 측벽에는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1동 3, 4호 라인 전면에 주민가페와 수경시설 및 휴게공간이 계획되며 이에 따라 인접 세대는 소음, 본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1동 4호 라인 측면에 옥외 엘리베이터 설치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01동 4호 측벽에 D.A.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본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mark>근린생활시설</mark>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 · 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장소와 인전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 동선으로 인해 세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은 지상에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801동 후면부는 주출입구로써 이동 동선이 많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02동 2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 질수 있습니다. •802동 4호 세대 전면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저층부 세대의 조망 간섭,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02동 전면부에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지본에 실외기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저층부 세대에 소음, 본진, 뱀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02동 전면부에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지본에 실외기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저층부 세대에 소음, 본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2동 3,4호 라인 측면에 부출입구가 위치하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03동 1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 질수 있습니다 - 800동 후면부는 지하주차장출입구 및 부출입구가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0동 3,45호 세대 후면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0동 3,45호 라인 전면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전 세대는 소음, 본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0동 후면에는 주민운동시설이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03통 전면부에 DA(기계실, 전기실) 및 자수조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밤새 소용, 분진, 전통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03통 전면부에 단지 복서축 부출입 동선이 계획되어 있고 이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4동 1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했에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 질수 있습니다

- 805동 3호 라인 1층에는 필로타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타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 질수 있습니다. • 805동 4.5호 세대 후면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2동 3.4호 라인은 근란생활시설 실외기 설치공간이 근생 지붕에 계획되어 있고, 상가주차장 및 상가 이용 동선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805동 후면에는 돌봄센터와 경로당이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05동 1.2호 라인 후면 5호 라인 전면에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이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05동 4.5호 라인 후면에 DA/대하주자3인 환기사설가 생겼되며 이에 때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본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05동 4.5호 라인 주면에 DA/대하주자3인 환기사설가 생겼되며 이에 때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본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05동 1.2.3.4호 라인 전면 대지경계 또는 완충녹지 경계에 방음벽이 설치 될 예정이며, 조망 간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05동 전면에 외부로 연결되는 보행 계단 설치예정으로 저충부 세대는 조망 간섭.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8M 도로면에 인접한 805동 측벽에는 야간경관조명이 설치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에서는 소음, 조망, 빛 공해 등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6동 5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 질수 있습니다 • 800동 전면에 외부로 연결되는 보행 게단 및 옥외 엘리베이터 설치에정으로 저충부 세대는 조망 간섭,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00동 전면에 의부로 연결되는 보행 게단 및 옥외 엘리베이터 설치에정으로 저충부 세대는 조망 간섭,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00동 전면에는 어린이놀이터 및 돌본센터 및 경로당이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6동 1, 2, 3, 4호 라인 전면에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이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 ** 806동 5호 라인 홈단에 D소(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대로 조망 간선 1번째 소음, 본건 지통 등으로 인한 피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06동 5克 라인 홈단에 D소(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대로 조망 간선 1번째 소음, 본건 지통 등으로 인한 피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06동 1, 2, 3, 4호 라인 전면 완충녹지 경계에 방음벽이 설치 될 예정이며, 조망 간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8M 도로면에 인접한 806동 측벽에는 야간경관조명이 설치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에서는 소음, 조만, 빛 공해 등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승인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자랑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혜주차장 출입구 및 지성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쟁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지혜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취해될 수 있습니다. - 스프릴콤식 설치 등으로 세대 부부전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프릴콤식 설치 등으로 세대 부부전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해당 관청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F틱형의 기본 천장고는 2,30m로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물 천장고는 약 2,4m로 적용되었으나,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익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은 기준층 세대 기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가구와 천장 사이에 간격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 내 각 실 위치의 출입문 폭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의 폭·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기할 수 있습니다.

■ 시언관계자 혀화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 의무 ※ 부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L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하에는 물보ન 승규들에 없었다. 전에 및 변경에는 단데 인간 다음 하는 전략 배금래권 및 임대우입급체권의 양당에 관한 사항 : 분양자에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로, 분양전환금 등 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블로부의 등 중 부가 구입되는다. 구입되는 집합하여 본 입주자단집공교에 기재된 결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분업우식금 및 인대수익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단집공교에 기재된 결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본 사업장의 PF대충 만료 전 대출금의 전부를 상환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센터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업주체와 시공사인 ㈜비에스산업, ㈜한양으로 명의변경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이에 이의 없이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경시] 구박보시보증증시를 취미합니다. 이미 됩답니다. 주채무가 J로수에 적힌 시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환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면,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지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증사고 전에 주택분앙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앙계약을 해제 또는 해시한 경우는 세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태공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앙되는 복리시설의 분앙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시앙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지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앙계약을 체결하여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0. 구세구시 88시합보게 1시8시 또는 1 배교시 8이 보스에 많아 제가 당한을 되어 발표한 합니다. 17. 주체무자 · 동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1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발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전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재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재/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① 보증사고로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서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장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패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정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파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 분양관련 문의 ■ 견본주택 방문시 주치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수자인 견본주택 및 고객세터로 확인해 주시기

지하 2층~지상 34층, 6개동 / 전용 59㎡·84㎡ 총 **889세대** 시행 (취BS산업 시공 (취한영

1번 주차장 | 비전동 1099 소사벌 상업지역 제1공영주기 2번 주차장 | 죽백동 799 소사벌 상업지역 제2공영주

1,302,397,490